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5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엄태영 · 강명구
고동진 · 조은희 · 김재섭
박충권 · 이성권 · 이종배
김성원 · 서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 ·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,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· 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,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.

이에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화기구, 자동소화장치, 옥외소화전설비, 단독경보형 감지기과 같은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

치를 의무화함으로써,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신설)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화재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가연성·인화성 물질을 제조·저장·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(이하 “화재위험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계인은 소화기구, 자동소화장치, 옥외소화전설비,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화재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가연성·인화성 물질을 제조·저장·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(이하 “화재위험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계인은 소화기구, 자동소화장치, 옥외소화전설비,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